



제433회국회(임시회)
제1차 성평등가족위원회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단기보호시설 입소기간 확대 등 〉

■ 이주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5645호)

2026. 3.

성 평 등 가 족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단기보호시설 입소기간 확대 등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주회의원 등 18인
2. 제 안 일 : 2025. 12. 26.
3. 회 부 일 : 2025. 12. 2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가정폭력피해자를 보호하고 이들의 자립을 돕기 위하여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할 책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현재 단기보호시설 57개소, 장기보호시설 6개소가 설치·운영되고 있음.

그런데 단기보호시설은 6개월의 범위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어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등 유사시설의 보호기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그 기간이 짧음. 또한 장기보호시설의 수가 단기보호시설에 비하여 현저히 적어 가정폭력피해자의 자립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단기보호시설의 보호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기보호시설을 충분히 확충하도록 책무를 부여함으로써 가정폭력피해자가 안정적으로 회복하고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5항 및 제7조의2제1항제1호).

Ⅲ. 검토의견

1. 단기보호시설 입소기간 확대 등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피해자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기보호시설을 확충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단기보호시설의 기본 보호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임 (안 제4조제5항 신설, 안 제7조의2제1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 ④ (생략) <u><신설></u>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 ④ (현행과 같음) <u>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피해자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보호시설을 확충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u>
제7조의2(보호시설의 종류) ① 보호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기보호시설: 피해자등을 <u>6개월</u> 의 범위에서 보호하는 시설 2. ~ 4. (생략) ② (생략)	제7조의2(보호시설의 종류) ① ----- -----. 1. ----- <u>1년</u> ----- ----- 2.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현행법 제7조의2¹⁾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함)의 종류를 단기보호시설, 장기보호시설, 외국인보호시설, 장애인보호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며, 단기보호시설은 6개월(3개월 범위에서 두 차례 연장 가능), 장기보호시설, 외국인보호시설 및 장애인보호시설은 최대 2년까지 입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보호시설은 가정폭력피해자 및 동반아동에게 즉각적인 물리적 안전을 제공하고, 그들이 심신의 피해를 치유하고 안정을 되찾아 이후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함.

그런데, 현재 내국인 보호시설 63개소 중 57개소(90.5%)가 단기보호시설로 입소기간이 최대 12개월임. 현실적으로 1년 내에 가정폭력피해자가 안정적인 거주지를 찾거나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취업능력을 갖추기 쉽지 않은 측면이 있는데, 최대 2년까지 머물 수 있는 장기보호시설(외국인·장애인 제외)은 전국 4곳(서울, 부산, 광주, 경기)에 불과함.

이에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장기보호시설을 확충하는

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보호시설의 종류) ① 보호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기보호시설 : 피해자등을 6개월의 범위에서 보호하는 시설

2. 장기보호시설 : 피해자등에 대하여 2년의 범위에서 자립을 위한 주거편의(住居便宜) 등을 제공하는 시설

3. 외국인보호시설 : 외국인 피해자등을 2년의 범위에서 보호하는 시설

4. 장애인보호시설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인 피해자등을 2년의 범위에서 보호하는 시설

② 단기보호시설의 장은 그 단기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등에 대한 보호기간을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3개월의 범위에서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다.

등의 책무를 부여하고, 단기보호시설의 기본 입소기간을 1년으로 연장(연장 시 최대 입소기간 1년 → 1년 6개월)함으로써 가정폭력피해자가 보호시설에 충분히 머물면서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보다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임.

개정안과 같이 입소기간을 연장하면 단기보호시설의 최대 입소기간이 1년 6개월(1년 + 3개월 범위 내에서 두 차례 연장 가능)로 장기보호시설(2년)과의 입소기간 차이가 6개월에 불과하여 단기보호시설과 장기보호시설의 구분이 모호해지는 측면이 있으나,

현재 장기보호시설이 4개소에 불과하고, 피해자가 이혼소송을 하거나 동반 자녀의 학기 중에 입소기간이 만료되는 등 특별한 상황 발생 시 1년 이상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단기보호시설의 입소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

참고로, 성폭력피해자나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시설의 경우 일반시설에서는 장·단기 구별을 두지 않고 최대 2년 6개월까지,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그룹홈)은 최대 4년까지 지원하고 있음.

-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은 일반보호시설, 특별지원 보호시설,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장애인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의 경우 입소 당시 미성년자였던 피해자는 25세가 될 때까지 입소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종류 및 입소기간 비교 >

구분	시설 종류	기본 입소기간	최대 입소기간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6개월	1년 (6개월+3년 2회)
	장기보호시설	2년	2년 (연장 없음)
	외국인보호시설	2년	2년 (연장 없음)
	장애인보호시설	2년	2년 (연장 없음)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²⁾	일반보호시설	1년	2년 6개월(1년 + 1년 6개월) * 입소 당시 미성년자였던 피해자는 25세가 될 때까지
	장애인보호시설	2년	피해회복에 소요되는 기간까지 연장 가능
	특별지원 보호시설	19세 될 때	25세가 될 때까지 (19세+ 6년 연장)
	외국인보호시설	1년	피해회복에 소요되는 기간까지 연장 가능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2년	4년(2년 + 2년) * 입소 당시 미성년자였던 피해자는 25세가 될 때까지
	장애인 자립지원 공동 생활시설	2년	4년(2년 + 2년) * 입소 당시 미성년자였던 피해자는 25세가 될 때까지
성매매피해자등 지원시설 ³⁾	일반지원시설	1년	2년 6개월 (1년 + 1년 6개월)
	청소년지원시설	19세 될 때	21세 될 때 (19세+ 2년 연장)
	외국인지원시설	3개월	3개월 (연장 없음)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2년	4년 (2년 + 2년)

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보호시설의 설치·운영 및 종류)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호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보호시설: 피해자에게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하는 시설
2. 장애인보호시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인 피해자에게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하는 시설
3. 특별지원 보호시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른 피해자로서 19세 미만의 피해자에게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하는 시설
4. 외국인보호시설: 외국인 피해자에게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하는 시설. 다만,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외국인보호시설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5.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보호시설을 퇴소한 사람에게 제13조제1항제3호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 시설
6. 장애인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제2호의 보호시설을 퇴소한 사람에게 제13조제1항제3호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 시설

다음, 개정안 제4조제5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장기보호 시설 확충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법 제4조4)제1항제3호 및 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21273호, 2025.12.30. 개정, 2026. 7. 1. 시행)
제16조(보호시설의 입소기간) ① 제12조제3항에 따른 보호시설의 종류별 입소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보호시설: 1년 이내. 다만,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6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2. 장애인보호시설: 2년 이내. 다만,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회복에 소요되는 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
 3. 특별지원 보호시설: 19세가 될 때까지. 다만, 피해자가 입소기간을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5세가 될 때까지 연장할 수 있다.
 4. 외국인보호시설: 1년 이내. 다만,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회복에 소요되는 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
 5.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2년 이내. 다만,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6. 장애인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2년 이내. 다만,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 ② 제1항제1호 단서, 같은 항 제5호 단서 및 같은 항 제6호 단서에도 불구하고 일반보호시설,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및 장애인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에 입소 중인 피해자로서 입소 당시 미성년자였던 피해자가 입소기간을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5세가 될 때까지 연장할 수 있다.
- ③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일반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소기간을 초과하여 연장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른 입소기간의 연장에 관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3)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지원시설의 종류) ①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 지원시설: 성매매피해자등을 대상으로 1년의 범위에서 숙식을 제공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시설
 2. 청소년 지원시설: 19세 미만의 성매매피해자등을 대상으로 19세가 될 때까지 숙식을 제공하고, 취학·교육 등을 통하여 자립을 지원하는 시설
 3. 외국인 지원시설: 외국인 성매매피해자등을 대상으로 3개월(「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기간)의 범위에서 숙식을 제공하고, 귀국을 지원하는 시설
 4.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성매매피해자등을 대상으로 2년의 범위에서 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시설
- ② 일반 지원시설의 장은 1년 6개월의 범위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③ 청소년 지원시설의 장은 2년의 범위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④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의 장은 2년의 범위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매매피해자등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 회복에 소요되는 기간까지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의 예방·방지와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가정폭력 신고체계의 구축 및 운영

로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과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등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4조 제4항은 보호시설에 대하여 경비를 보조하는 등 이를 육성·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장기보호시설은 보호시설에 해당하므로 이들 규정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으며, 보호시설 설치·운영 및 필요한 재원 확보 등 예산상 조치, 보호시설 육성·지원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면서 장기보호시설 확충이라는 개별적 사항을 동시에 규정하는 것은 법체계상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봄.

개정안에 대하여 성평등가족부는 제4조제5항 신설과 관련해서는 법 제4조 및 제7조 등에서 이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호시설 설치·운영 책무와 경비 보조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만큼 “장기보호시설 확충”을 별도 책무로 중복 규정하는 부분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나,

단기보호시설 입소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보호시설 입소자 중 자립

-
2.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3.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4. 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 부여, 직업훈련 등 자립·자활을 위한 지원서비스 제공
 5. 법률구조 및 그 밖에 피해자에 대한 지원서비스 제공
 6.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기관 간의 협력 체계 구축 및 운영
 7. 가정폭력의 예방·방지와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의 수립·시행 및 평가
 8. 피해자와 제4조의6에 따른 긴급전화센터,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제7조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상담원 등 종사자의 신변보호를 위한 안전대책 마련
 9. 가정폭력 피해의 특성을 고려한 피해자 신변노출 방지 및 보호·지원체계 구축
 10. 가정폭력을 목격하거나 피해를 당한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상담·치료프로그램 제공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등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③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가정폭력의 예방·방지 및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담당할 기구와 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2항과 제7조제2항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대하여 경비(經費)를 보조하는 등 이를 육성·지원하여야 한다.

준비나 소송 진행을 위한 추가 지원이 필요하거나, 퇴소 시 동반 자녀의 학기 중 전학에 대한 어려운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 1년 이상 보호가 요구되는 사례가 존재하는 점을 고려할 때, 단기보호시설 입소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는 것은 타당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644
